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1가단2879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26 선고 2021나63110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1가단2879 판결

전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

담당변호사 김재인, 정우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론종결 2021. 6. 17.

판결선고 2021. 7. 8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17. 11. 1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. 6. 28. 접수 제123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2003. 10. 24. 현재 기준 D은행 등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83,525,761원의 대출채무가 있었는데, E 주식회사는 2003. 10. 24. D은행 등으로부터 위 대출채무를 양도받았고, 원고는 같은 날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무를 다시 양도받았다.

나. 원고는 2017. 7. 25. C에게 위 대출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49183호로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7. 8. 1. C에게 18,756,2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C에게는 가족으로 아버지 F, 어머니 피고, 형제 G이 있었는데, 2017. 11. 1. F이 사망하였다(이하 F을 ‘망인’이라고 한다).

라.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를 보유하고 있었다.

마.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. 11. 1.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협의분할’라고 한다), 2018. 6. 28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,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C이 기초사실에서와 같은 대출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는 약 26평 정도이고,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과 1960년경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다가 1966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약 50년 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어 보이는 점, ③ 피고의 자녀들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모두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망인의 자녀들은 어머니인 피고가 오랜 기간 자녀들을 부양하였고, 피고가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어 남은 여생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보내라는 의미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이와 같이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으로 보이는 점, ⑦ 피고의 다른 자녀인 G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, ⑧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,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'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달리 망인이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비록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,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C이 사해의사를 가지고,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손승우

[별지]

부 동 산 의 표 시
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 89㎡

2. 서울특별시 강서구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강서구

세덴부록조 외곽

평가권주택 1동

26.45㎡

(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, 소유)

